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4264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여◯◯, 김◯◯
피 고	1. ◯◯특별시 ◯◯구청장
	2.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3. ◯◯특별시 ◯◯구청장
	4. ◯◯특별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특별시 ◯◯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순번 제1 내지 5 기재 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0. 2. 9.부터 2010. 3. 2.까지 아래 표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록이 마쳐졌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등록일자	등록명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1.6 DOHC	2010. 3. 2.	원고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1.6 DOHC	2010. 2. 24.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2010. 2. 9.	
(차량번호 4 생략)	포르테	2010. 2. 9.	
(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2010. 3. 2.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특별시 ○○구청장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순번 제1 내지 5 기재 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판단의 기준

과세처분에 대해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1) 원고는 2024. 10. 31. 별지 제2목록 순번 제6 내지 15 기재 각 처분에 관한 소는 취하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당연무효를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과세처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 4, 5,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0. 19. 노숙인 복지시설인 B에 입소하였다가 2009. 11. 9. 퇴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년 초경부터 ○○○역 등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였다. 그런데 원고를 대표자, 상호를 C, 사업장 소재지를 ○○시 D, 개업일을 2010. 1. 11.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0. 7. 16. 폐업되었고, 원고를 대표자, 상호를 E 주식회사, 사업장 소재지를 ○○ ○○구 F, 개업일을 2010. 2. 5.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10. 5. 20. 폐업되었다.

2) 원고는 2010. 7. 14. ○○특별시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해당 진료기록(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2010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범죄 피해로 감금되었고, 이 사건 이후로 피해 의식이 생겼다'고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신의 상태를 설명하였다.

3) 원고는 2013년 8월경 홈리스 단체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은 감금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남성들(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이 사건 고소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들이 2010년 초순경 ○○○역 대합실에서 원고에게 취업을 시켜준다고 접근하여 ○○의 주택으로 유인하였고, ○○ 등지에서 원고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4) 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은 수사를 진행한 후 2014. 1. 22.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이 불명이라는 이유로 각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는데, 해당 불기소이유서(이하 '이 사건 불기소이유서'라 한다)에는 수사결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을 등록소에 직접 등록한 H는 2010년경 'I'이라는 회사에서 몇 개월 임시직으로 일하며 차량 등록에 관한 일만 관여했고, 위 회사 및 직원들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진술이다. ○ I 대표이사 J는 차량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시장 자체가 뜨내기 식으로 운영되어 차량을 파는 자들에 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고, 회사 역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고, 모든 계약서는 폐기처분했다는 진술이다.

다.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등록에 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소유권등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1) 원고는 2009년 10월경부터 노숙자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역 등지에서 노숙하며 생활하였다. 그런 원고에게 2010. 2. 9.부터 2010. 3. 2.까지 5대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마칠 특별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을 위한 금전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2) 원고는 2010. 7. 14. ○○특별시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에게 '2010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범죄 피해로 감금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0년 1월경부터 2월경 사이에 원고에게 사업을 영위할 자력이나 역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록이 이루어졌고,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두 차례 이루어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위 각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범죄 피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신빙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불기소이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3자가 경제적 자력이나 생활능력이 없는 원고로부터 숙식이나 취업 등의 기회제공을 빌미로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마쳤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라.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신원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구 자동차등록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8항 본문 등에 의하면,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판결문을 첨부하지 아니고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등록을 말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노숙자로 생활하던 중 제3자의 숙식과 취업 기회제공 약속을 신뢰하거나 이에 속아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처를 알지 못한 채로 이 사건 자동차 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3) 원고는 정신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이 사건 처분의 실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연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할 경제적인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납세의무자 권익구제의 관점에서 현저히 부당하다. ○○특별시 ○○구청장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 등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이○○

판사 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별지]

제1목록

순번	처분청	과세대상	세목명	과세년월	부과금액(원)
1	○○구청장		자동차세	201806	27,880
2				201808	96,920
3				201808	96,920
4				201808	97,340
5				201808	97,340
6				201903	97,340
7				201903	97,340
8				201903	97,340
9				201903	96,920
10				201906	27,880
11				202003	89,460
12				202003	89,850
13				202003	89,850
14				202003	89,460
15				202007	27,590
16				202007	17,550
17				202007	24,420
18				202007	17,550
19				202007	27,880
20				202102	82,000
21				202102	82,000
22				202102	82,360
23				202102	82,360
24				202108	27,880
25				202207	27,880
26				202405	89,850
27				202405	89,460
28				202405	89,460
29				202405	89,850
30	○○구청장		자동차세	201312	134,790
31				201312	134,190
32				201312	134,190
33				201312	134,790
34				201406	127,300
35				201406	126,730
36				201406	126,730
37				201406	27,880
38				201406	127,300
39				201412	126,730
40				201412	127,3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순번	처분청	과세대상	세목명	과세년월	부과금액(원)
41	○○구청장		자동차세	201412	127,300
42				201412	126,730
43				201506	27,880
44				201507	119,280
45				201507	119,280
46				201507	119,800
47				201507	119,800
48	○○구청장		자동차세	201306	27,880
49				201306	134,190
50				201306	134,790
51				201306	134,190
52				201306	134,790
53	○구청장		자동차세	201006	99,280
54				201006	104,220
55				201006	116,000
56				201006	116,000
57				201006	22,920
58				201012	149,760
59				201012	149,760
60				201012	149,120
61				201012	149,120
62				201106	149,120
63				201106	149,760
64				201106	149,760
65				201106	149,120
66				201106	27,880
67				201212	142,270
68				201212	142,270
69				201212	141,660
70				201212	141,6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06

[별지]

제2목록

순번	처분청	과세대상	세목명	과세년월	부과금액(원)
1	○○구청장		환경개선부담금	201503	82,340
2				201403	79,450
3				201409	81,370
4				201509	82,800
5				201309	66,270
6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과태료	201409	531,000
7				201410	531,000
8				201409	531,000
9				201409	531,000
10	○구청장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201103	1,593,000
11				201103	1,593,000
12				201104	1,593,000
13				201104	1,593,000
14				201103	1,593,000
15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과태료	201111	531,000

※ 별지 제2목록 순번 1번의 부과금액 '82,340원'은 오기이므로, 이를 '82,430원'으로 정정한다. 끝.